

2022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행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3.02.24.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이사 최진준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2
다. 관련 규정	3
2. 이사회	3
가. 역할 (권한과 책임)	3
나. 구성 (이사)	6
다. 활동내역	8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21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의사회 의장 선임 사유	21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2
가. 역할(권한과 책임)	22
나. 구성	22
다. 선임기준	23
라. 활동내역 및 평가	25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26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26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26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27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27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27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29
바. 사외이사 평가	30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31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31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32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33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33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33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33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35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35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36
바. 이사회외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36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36
6. 감사위원회	37
가. 역할(권한과 채무)	37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3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39
라. 감사보조조직 등	43
7. 위험관리위원회	43
가. 역할(권한과 책무)	43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45
다. 활동내역 및 평가	45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51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51
제 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52
가. 총괄	52
나. 구성	52

다. 권한과 책임	53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55
2. 보수체계	56
가. 주요사항	56
나. 보수 세부사항	59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60
첨부	63
가. 정관	63
나. 이사회 규정	82
다. 감사위원회 규정	87
라. 지배구조내부규범 규정	92
마. 위험관리기준	105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 ('2022년말 현재는 이사회의 75%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 ('22년말 현재 이사회는 법률분야 2명, 비금융분야 1명으로 구성)하여 균형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이사회규정 등 주요 내규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사외이사 등의 활동에 대한 회사 내·외부의 평가결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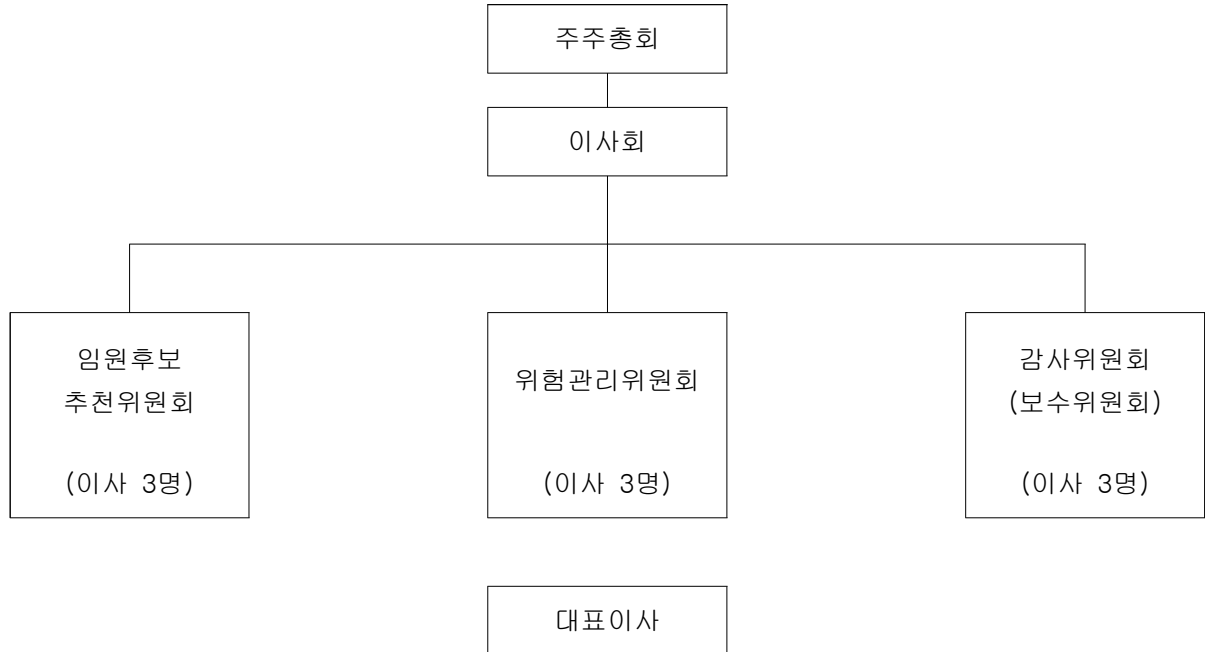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www.sangsanginplussb.com)

(협회 사이트 주소 : www.fsb.co.kr)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서도 매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이 3명, 75%로 타 금융회사에 비해 높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 (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 외·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주요경영사항 검토 및 의사결정	3/4	최진준(상임)	정관§제4장 이사회규정§제2조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업무 관련 총괄 (보수체계관련 업무)	3/3	윤광기(사외)	정관§제39조의5 감사위원회규정§제8조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임원 후보 추천	2/3	김순임(사외)	정관§제39조의4
위험관리 위원회	위험관리 업무 총괄	2/3	김순임(사외)	정관§제39조의6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이사회 규정
- 첨부3. 감사위원회 규정
- 첨부4. 지배구조법 내부규범
- 첨부5. 위험관리기준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사회 본연의 견제 기능 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이사회는 경영목표·전략(사업계획)을 수립·평가합니다. (지배구조법§제15조 제 ①항 제1호, 정관§제31조)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신상품 개발 및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리스크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나) 정관 변경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제15조 제①항제2호, 정관§제31조)

2022년도에는 정관변경(안)과 관련하여 이사회 심의·의결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최일	안건	정관변경관련 세부 안건	비고
2022.02.21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일부 문구 정비 - 정관 41조, 제45조, 제45조의2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임직원 보수 포함)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배당을 포함한 결산(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제15조 제①항제2호, 정관§제31조) 이 경우 예산은 사업계획과 함께 심의·의결하고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 양·수도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제15①항 제4호, 정관§제31조)

이뿐 아니라 본부 및 영업점 신설·폐지 등 직제와 업무분장 관련 조직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 「내부통제기준규정」의 제·개정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제15①항 제5호, 정관§제31조)

이에 따라 2016년 10월에 개최된 제47차 이사회에서 「내부통제기준규정」 개정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건전경영활동 및 임직원 법령준수 등을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등 내부통제 평가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로부터의 분기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 감사위원회로부터의 매년 1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매년 1회 내부통제체제 모니터링 결과

이사회는 경영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기준의 수립과 평가에 관련해서도 감독하고 있으며, 「위험관리규정」의 제·개정을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는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위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험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결정한 경영목표 및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의 결정과 더불어 위험한도 준수 여부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등의 위험관리 평가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험관리 담당조직으로부터의 매월 정기 리스크관리 보고서
- 위험관리 담당조직으로부터의 한도운용 현황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이사회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 및 정책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제15조제①항제6호, 정관§제31조).

이에 따라 2016년 10월 개최된 제28차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이사회 중심의 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지배구조 원칙 및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이사회는 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 등이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주주 및 이사와의 거래내용을 승인하고 감독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제①항제6호, 정관§제31조)

또한 이사회는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해당 거래의 내용 및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며,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이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심의 및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거래 등을 보류시킴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해상충의 소지가 해소되었을 때 다시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해상충의 소지가 해소될 수 없는 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

결로 처리하여 계약체결 등 해당 거래를 제한합니다.

아) 기타

기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에 첨부된 회사의 내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 총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그 중 사외 이사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정관 제27조). '22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4명의 이사(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선임 시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임기가 차기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때는 그 때까지 연장됩니다.

이사는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자, 그 밖의 이사회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이사가 되지 못하며, 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저축은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전문경영인(주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등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 기타 위의 자격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2022년말 현재 이사의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경영분야 1명, 법률분야 2명, 비금융분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는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최진준이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2022년 03월 03일에 선임되었습니다.

2) 구성원

가) 사내이사 최진준 (이사회 의장)

- 이사임기 : 2022.03.03. ~ 2025.03.03.
- 상임여부 : 상임(대표이사)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 : 이사회 의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재임기간 : 9개월
- 경력사항
 - 1992.09 ~ 2000.06 : 하나은행 대리
 - 2003.11 ~ 2006.04 : 솔로몬저축은행 차장
 - 2006.05 ~ 2007.02 : 푸른저축은행 차장
 - 2007.02 ~ 2011.01 : 솔로몬저축은행 팀장
 - 2011.01 ~ 2022.02 : 상상인저축은행 기업금융본부장
 - 2022.03 ~ 현재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이사

나) 사외이사 윤광기

- 이사임기 : 2017.12.22. ~ 2023.12.22.
- 상임여부 : 비상임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 : 감사위원회 의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재임기간 : 60개월
- 경력사항
 - 2006.04 ~ 2016.01 :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 2016.01 ~ 2017.03 :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 2017.04 ~ 2020.03 : 법무법인 평원 변호사
 - 2020.04 ~ 현재 : 법무법인 현백 대표변호사

다) 사외이사 황종근

- 이사임기 : 2020.03.27. ~ 2024.03.03.
- 상임여부 : 비상임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 : 감사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재임기간 : 33개월
- 경력사항
 - 1999.03 ~ 2020.08 : 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외)
 - 2020.09 ~ 현재 : 법무법인 해송 및 상상인인더스트리 사외이사

라) 사외이사 김순임

- 이사임기 : 2017.03.30. ~ 2023.03.12.
- 상임여부 : 비상임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 : 감사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의장,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의장
- 재임기간 : 69개월
- 경력사항
 - 1998.01 ~ 2003.01 : KB국민은행 고객만족팀
 - 2010.01 ~ 현재 : Arte10 Collection Art Advisor(Madrid)
 - 2011.01 ~ 현재 : 사)한국사진활용교육협회 교육파트장

3) 요약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최진준	상임	대표이사	상기내용참조	'22.03.03	'25.03.03	9개월	임추위 위험관리위
황종근	사외	감사위원	상기내용참조	'20.03.27	'24.03.03	33개월	감사위 임추위
윤광기	사외	감사위원장	상기내용참조	'17.12.22	'23.12.22	60개월	감사위 위험관리위
김순임	사외	감사위원 위험관리위원장 임추위의장	상기내용참조	'17.03.30	'23.03.12	69개월	감사위 임추위 위험관리위

다. 활동내역

이사회는 2022년에는 총14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100%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6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소집 횟수가 2회 감소하
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2년도 제 1차 이사회 : 2022.01.13
[안건 통지일 : 2022.01.0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송기문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1. 이사 성명	송기문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¹⁾					
가. 제50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교 1)

가 : 제50기 (2021.01.01~2021.12.31)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나) 제2022년도 제 2차 이사회 : 2022.01.24

[안건 통지일 : 2022.01.2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송기문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1. 이사 성명	송기문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¹⁾					
가. 대출채권 매각의 건 (리테일금융본부_이00외 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태 점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1.03분기 감리활동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규정 개정의 건 (부동산담보대출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승인의 건 (장00)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규정 개정의 건 (여신심사위원회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규정 개정의 건 (여신심사위원회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2021년도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2021년 4분기 자금세탁방지업무 보안 위험 점검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2021년 4분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 제위원회 결의 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카.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타. 규정 제정의 건(광고심의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파. 규정 개정의 건(주식연계채권취급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하. 대출채권매각의 건 (리테일금융본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가. 2022.01분기 채권 대손인정신청 처리 의 건 (리테일금융본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김00 외 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교 1)

- 가 : 지속적인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채권으로 경매진행시 장시간 소요 예상되어 매각진행
- 나 :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다 : 2021.03분기 감리활동 결과 보고
- 라 : 리테일금융본부의 사업자모기지론 운영규정 세분화
- 마 : '유가증권 담보대출규정' 9조의 ① 및 '주식담보대출 리스크관리지침' 제5조의 ① 및 제6조의 ③에 해당
- 바 : 여신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 : 여신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아 : 내부통제기준 제7조 제④항 및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15조 제②항에 의거
- 자 : 당행 규정 「FIU보고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FIU보고정보 업무와 관련한 AML보고용 PC, AML관련자료 및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
- 차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23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④항에 의거
- 카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16조 제5항에 의거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 파 : 이사회규정 제 6조에 의거
- 하 : 금융감독원 상시감시팀 유가증권담보대출 자체점검 요청 사항 (2021.12.10)에 따른 후속조치 (주식연계대출 (직접매입) 관련 내규의 적정성)
- 가 : 워크아웃(회수의문, 추정손실)채권
- 나 : 旣 선임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사임으로 인해 선임

다) 제2022년도 제 3차 이사회 : 2022.02.21

[안건 통지일 : 2022.02.1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송기문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¹⁾					
가. 규정 개정의 건 (유가증권담보대출규정 외 2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2.01분기 채권 대손인정신청 처리의 건 (종합금융본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규정 개정의 건 (부동산담보대출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대출채권 매각의 건 (리테일금융본부_ 000외 5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이사회규정 개정 및 대손충당금 실제 추가적립 기준 마련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규정 개정의 건 (오토론 운영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

* 비교 1)

가 : 유가증권담보대출규정, 부동산담보대출규정,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

나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6조 (대손인정의 신청) 제1항

다 : 리테일금융본부가 취급하는 사업자모기지론 운영규정 세분화

라 : 지속적인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채권으로 경매진행시 장시간 소요 예상되어 매각진행

마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세칙 제23조의2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심의·의결 절차 마련

바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결정의 건

사 : 신용점수 舊 스코어(RK0400) → 新 스코어 (RK0600) 사용에 따른 심사기준 변경

라) 제2022년도 제 4차 이사회 : 2022.03.03

[안건 통지일 : 2022.02.28.]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¹⁾					
가. 임시의장 선임, 대표이사 변경, 지배인 해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회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교 1)

가 : 임시의장 선임, 대표이사 변경 지배인 해임의 건

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마) 제2022년도 제 5차 이사회 : 2022.03.30

[안건 통지일 : 2022.03.2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1. 이사 성명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¹⁾					
가. 규정 개정의 건 (인사위원회규정, 위험관리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규정 개정의 건 여신심사위원회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대출채권 매각의 건 (송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대출채권 매각의 건 (리테일금융본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2.01분기 채권 대손자체상각 추가 신청의 건 (리테일금융본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기간연장 승인의 건 (이OO외 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2021.04분기 감리활동 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2021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수행 실적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대출채권 매각의 건 (리테일금융본부_ 이OO 외 8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가 : 각종 위원회 위원 변경

나 : 여신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다 : 현재 공매 9회차 유찰, 다수의 압류와 시공사 유치권 등으로 낙찰가 지속적인 하락 등 채권회수 시까지 장기간 소요 예상되어 매각진행

라 : 워크아웃(회수의문, 추정손실)채권

마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6조 (대손인정의 신청) 제1항

바 : 대출규정 제4조1항(대출의 비적격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사 : 2021.04분기 감리활동 결과 보고의 건

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4,5항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 2의 3항에 의거

자 : 지속적인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채권으로 경매진행시 장시간 소요 예상되어 매각진행

바) 제2022년도 제 6차 이사회 : 2022.04.18

[안건 통지일 : 2022.04.1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1. 이사 성명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¹⁾					
가. 규정 개정의 건 (부동산담보대출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규정 개정의 건 (금리인하요구권운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규정, 업무분장규정)					
다. 대출채권 매각 보고의 건 (리테일금융본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규정 개정의 건 (위험관리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승인의 건 (장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규정 개정의 건 (오토론 운영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 결과 보고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교 1)

가 : 리테일금융본부가 취급하는 사업자모기지론 운영규정 세분화

나 : 금융위 발표 (2021.11.01)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후속조치

다 : 워크아웃(회수의문, 추정손실)채권

라 : 투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 구성원 변경

마 : '유가증권 담보대출규정' 9조의 ① 및 '주식담보대출 리스크관리지침' 제5조의 ① 및 제6조의 ③
에 해당

바 : 취급기준 변경을 통한 영업력 강화 및 불용문구 삭제

사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의2제3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의2
에 의거

사) 제2022년도 제 7차 이사회 : 2022.05.11

[안건 통지일 : 2022.05.0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1. 이사 성명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¹⁾					
가. 2022.02분기 채권 대손자체상각 신청의 건 (리테일금융본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2.02분기 채권 대손 인정 신청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기간연장 승인의 건 (이OO, 임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울O 전환사채 대출취급 (사채인수)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프OOOOO 전환사채 대출취급 (사채인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대출채권 매각의 건 (리테일금융본부_ 박OO 외 10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2022년도 수정 경영계획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교 1)

가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6조 (대손인정의 신청) 제1항

나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6조 (대손인정의 신청) 제1항

다 : 대출규정 제4조1항(대출의 비적격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라 : 주식연계채권 취급규정 제6조의 제②항에 의거

마 : 주식연계채권 취급규정 제6조의 제②항에 의거

바 : 지속적인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채권으로 경매진행시 장시간 소요 예상되어 매각진행
 사 : 이사회규정 제 6조에 의거

아) 제2022년도 제 8차 이사회 : 2022.06.15

[안건 통지일 : 2022.06.0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1. 이사 성명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¹⁾					
가. 우0000 전환사채 대출취급 (사채인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대출채권 매각 보고의 건 (리테일금융본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규정 개정의 건 (유가증권담보대출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2년 1분기 자금세탁방지업무 보안 위험 점검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2년 준법감시인 연간 활동 계획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22년 자금세탁방지업무 교육, 연수 진행 내역 및 연간 교육계획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2022.02분기 채권 대손자체상각 신청의 건 (리테일금융본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대출채권 매각의 건 (리테일금융본부_김OO 외 17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가 : 주식연계채권 취급규정 제6조의 제②항에 의거

나 : 워크아웃(회수의문, 추정손실)채권

다 : 유가증권담보대출 취급 요건 완화

라 : 당행 규정 「FIU보고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FIU보고정보 업무와 관련한 AML보고용 PC, AML관련자료 및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

마 :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2조 (준법감시인의 직무)에 의거

바 : 직원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책에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조(이사회역의 역할 및 책임) 및 업무 매뉴얼 3.2.1 이사회역의 역할 및 책임에 의하여 이사회 에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이 있어 2021년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업무교육과 2022년 연간 교육 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사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6조 (대손인정의 신청) 제1항

아 : 지속적인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채권으로 경매진행시 장시간 소요 예상되어 매각진행

자) 제2022년도 제 9차 이사회 : 2022.07.20

[안건 통지일 : 2022.07.1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1. 이사 성명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¹⁾					
가. 대출채권 매각의 건 (리테일금융본부_김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승인의 건 (박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승인의 건 (이OO, 이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2년 자금세탁방지업무 교육, 연수 진행 결과 1차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대출채권 매각 일정 변경의 건 (리테일금융본부_김OO 외 18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대출채권 매각 보고의 건 (리테일금융본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SOOO 후순위 회사채 인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규정 개정의 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2022년 2분기 자금세탁방지업무 보안 위험 점검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내부통제위원회 소집 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카. 2022.01분기 감리활동 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타. 비적격 유가증권 담보대출 연장의 건 (장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파. 대출채권 매각의 건 (리테일금융본부_박OO 외 11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 가 : 지속적인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채권으로 경매진행시 장시간 소요 예상되어 매각진행
- 나 : 대출규정 제4조1항(대출의 비적격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 다 : 대출규정 제4조1항(대출의 비적격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 라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조(이사회역의 역할 및 책임) 및 업무 매뉴얼 3.2.1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에 의거
- 마 : 대출채권 매각 일정 변경의 건 (리테일금융본부_김OO 외 18명)
- 바 : 워크아웃(회수의문, 추정손실)채권
- 사 : 주식연계채권 취급규정 제6조의 제②항에 의거, 이사회 규정 제6조에 의거
- 아 :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
- 자 : 당행 규정 「FIU보고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FIU보고정보 업무와 관련한 AML보고용 PC, AML관련자료 및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
- 차 : 내부통제기준 제8조(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 제23조에 의거
- 카 : 2022.01분기 감리활동 결과 보고의 건
- 타 : 비적격 유가증권 담보대출 연장의 건 (장OO)
- 파 : 지속적인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채권으로 경매진행시 장시간 소요 예상되어 매각진행

차) 제2022년도 제 10차 이사회 : 2022.08.17

[안건 통지일 : 2022.08.1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1. 이사 성명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¹⁾					
가. 규정 개정의 건 (문서관리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기간연장 승인의 건 (이OO, 임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규정 개정의 건 (오토론 운영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2.03분기 채권 대손 인정 신청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2.01,02분기 STR 및 CTR보고 소요기간 및 지연사유 점검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규정 개정의 건 (금고및중요열쇠관리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규정 개정의 건 (수수료등에관한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2022.03분기 채권 대손 인정 신청의 건 (리테일금융본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교 1)

가 : CI변경에 따른 양식 개정

나 : 대출규정 제4조1항(대출의 비적격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다 : 리테일금융본부 오토론 취급지침 세분화

라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척]제6조 (대손인정의 신청) 제1항

마 : 당행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에 의거 점검결과를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

바 : 조직개편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단순한 내부통제위주에서 추가적으로 입출사유 및 신용 정보관련 열람 유·무 등의 구체화된 사유의 확인이 요구됨에 따른 내규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

사 : 수수료 구분 명확화 및 수수료율 현실화

아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척]제6조 (대손인정의 신청) 제1항

카) 제2022년도 제 11차 이사회 : 2022.09.21

안건 통지일 : 2022.09.1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¹⁾					
가. 대출채권 매각 보고의 건 (리테일금융본부_김OO 외 5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규정 개정의 건 (위임전결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규정 개정의 건 (여신심사위원회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규정 개정의 건 (부동산담보대출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승인의 건 (장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임원 연임의 건 (감사실장 류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기간연장 승인의 건 (안OO, 김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교 1)

가 : 지속적인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채권으로 경매진행시 장시간 소요 예상되어 매각진행

나 : 위임전결규정 및 직무전결기준표 명확화

다 : 여신심의, 의결 대상 명확화

라 : 부동산담보대출규정 명확화

마 : ①담보의 거래정지 (2021.03.10 회계처리위반에 따른 상장실질심사 대상 결정)

바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조의 1항 및 2항에 의거

사 : 대출규정 제4조1항(대출의 비적격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타) 제2022년도 제 12차 이사회 : 2022.10.19

[안건 통지일 : 2022.10.1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1. 이사 성명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¹⁾					
가. 대출채권 매각 보고의 건 (리테일금융본부_김정학 외 8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2.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대출채권 매각 보고의 건 (리테일금융본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신용대출 크크크론 상품취급기준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2.03분기 STR 및 CTR보고 소요기간 및 지연사유 점검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22년 3분기 자금세탁방지업무 보안 위험 점검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369회전정기예금 특약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2022.02분기 감리활동 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교 1)

가 : 지속적인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채권으로 경매진행시 장시간 소요 예상되어 매각진행

나 : 2022.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다 : 워크아웃(회수의문, 추정손실)채권

라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크크크론 상품 취급 금리 인상

마 : 당행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에 의거 점검결과를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

바 : 당행 규정 「FIU보고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FIU보고정보 업무와 관련한 AML보고용 PC, AML관련자료 및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

사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23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④항에 의거

아 : 369회전정기예금 (369회전정기예금, 369회전정기예금(E), 비대면369회전정기예금, 크크크 369회전정기예금) 신상품 출시에 따른 특약 보고

자 : 2022.02분기 감리활동 결과 보고의 건

파) 제2022년도 제 13차 이사회 : 2022.11.16

[안건 통지일 : 2022.11.0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¹⁾					
가. 규정 개정의 건 (수수료등에관한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대출채권 매각 보고의 건 (리테일금융본부_백OO 외 6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승인의 건 (장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승인의 건 (오OO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내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22.04분기 채권 대손 인정 신청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시효완성채권 포기 및 채무 종결의 건 (법무팀 상각채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신용대출 크크크론 상품취급기준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기간연장 승인의 건 (이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승인의 건 (여O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교 1)

가 : 금리 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를 명확화

나 : 지속적인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채권으로 경매진행시 장시간 소요 예상되어 매각진행

다 : ‘유가증권 담보대출규정’ 9조의 ① 및 ‘주식담보대출 리스크관리지침’ 제5조의 ① 및 제6조의 ③에 해당

라 : ‘대출규정’ 제4조의 1항 (대출의 비적격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에 의거

마 : 내부통제기준 제7조 ④항 및 내부통제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거

바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6조 (대손인정의 신청) 제1항

사 : 상각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면책), 보증인의 파산(면책), 시효완성, 기타 종결사유등으로 인해 채권 포기가 확정된 채권을 소각

아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크크크론 상품 취급 금리 인상

자 : 대출규정 제4조1항(대출의 비적격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차 : ‘대출규정’ 제4조의 1항 (대출의 비적격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에 의거

하) 제2022년도 제 14차 이사회 : 2022.12.21

[안건 통지일 : 2022.12.1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1. 이사 성명	최진준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¹⁾					
가. 2022.04분기 채권 대손 인정 신청의 건 (리테일금융본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승인 보고의 건 (오OO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승인 보고의 건 (어O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업무집행책임자(비등기) 연임의 건 (배OO)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규정 개정의 건 (이사회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규정 제정의 건 (방문판매 모범규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대출채권 매각 보고의 건 (리테일금융본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규정 개정의 건 (감사위원회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이OOOO 전환사채 대출취급 (사채인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2023년도 경영계획수립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카. 대출채권 매각 보고의 건 (리테일금융본부_김OO 외 18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가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6조 (대손인정의 신청) 제1항

나 : '대출규정' 제4조의 1항 (대출의 비적격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에 의거

다 : '대출규정' 제4조의 1항 (대출의 비적격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에 의거

라 : 업무집행책임자(비등기) 연임의 건 (배OO)

마 : 이사회소집통지 방법 명확화 및 의결 참가수단 추가

바 : 방문판매법 시행 (2022.12.08)에 따라 금융상품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소비자보호 공백 발생 및 방문·전화권유 판매시 불완전판매 증가 등 부작용 발생 예방

사 : 워크아웃(회수의문, 추정손실)채권

아 : 감사위원회소집통지 방법 명확화 및 의결 참가수단 추가

자 : 주식연계채권 취급규정 제6조의 제②항에 의거

차 : 이사회규정 제 6조에 의거

카 : 지속적인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채권으로 경매진행시 장시간 소요 예상되어 매각진행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개최 7영업일 전까지 전년도 이사회 구성·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이사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이사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의 실질성, 이사회 규모의 적정성,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경영진 자문·감독 기능 수행, 의사결정에 금융회사의 윤리적 의무 및 사회적 책임사항 반영, 자료 제공의 적시성, 자료의 충실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이사회이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이사회는 이사회 전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제공되어 향후 사외이사 활동 수행에 참고하도록 하며, 또한 임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해당 사외이사를 추천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무기명 서면조사로 이뤄지고, 이 모든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지배구조법에서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사외의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2022년 03월 03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경영의사결정 적시성 및 신속성 제고 및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전문성 고려하여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최진준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여 당행의 정관에 의거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지배구조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저축은행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및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 정관 제27조의3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압축을 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대표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6.6%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배구조법 적용에 따라 2017년 3월 30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위원으로는 위원장 김순임 사외이사 등 2명의 사외이사와 대표이사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2) 구성원

가) 사외이사 김순임 (위원장)

- 이사임기 : 2017.03.30. ~ 2023.03.12.
- 상임여부 : 비상임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 : 감사위원, 위험관리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장
- 재임기간 : 69개월
- 경력사항
 - 1998.01 ~ 2003.01 : KB국민은행 고객만족팀
 - 2010.01 ~ 현재 : Arte10 Collection Art Advisor(Madrid)

- 2011.01 ~ 현재 : 사)한국사진활용교육협회 교육파트장

나) 사내이사 최진준

- 이사임기 : 2022.03.03. ~ 2025.03.03.
- 상임여부 : 상임(대표이사)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 : 이사회회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재임기간 : 10개월
- 경력사항
 - 1994.12 ~ 2004.01 : 플러스상호저축은행 팀장
 - 2004.08 ~ 2020.01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무이사
 - 2020.02 ~ 현재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이사

다) 사외이사 황종근

- 이사임기 : 2020.03.27. ~ 2024.03.03.
- 상임여부 : 비상임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 : 감사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재임기간 : 33개월
- 경력사항
 - 1999.03 ~ 2020.08 : 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외)
 - 2020.09 ~ 현재 : 법무법인 해송

3) 요약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기간
김순임	사외	임추위 위원장	상기내용참조	'17.03.30	'23.03.12	69개월
황종근	사외	사외이사	상기내용참조	'20.03.27	'24.03.03	33개월
최진준	상임	대표이사	상기내용참조	'19.02.27	'22.02.27	10개월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① 이사

- 관련 법류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자

② 사외이사

- 관련 법류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 전문경영인
(주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 기타 위의 자격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2) 후보 추천 절차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 등 임원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후보를 추천하며 저축은행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후보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는 최고경영자(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저축은행,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임원후보 추천절차는 당사의 경영목표(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표)에 적합한 임원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임원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절차 : 임원후보군 상시 관리 → 후보 검증 → 주주총회에 후보 추천
(주주제안권 행사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도 포함 추천)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보수체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수행합니다.
- ② 평가 기준 : 평가기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전문성(선임시 고려된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충실성(사외이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기여도(이사회등의 심의의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적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기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적정유무평가를 실시합니다.
- ③ 평가 절차 : 이사회이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평가방법 등에 대한 객관성 제고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의 전반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2년에는 총 2회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100%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2년도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03.02.

항목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순임	황종근	송기문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상정안건 ¹⁾				
가. 대표이사 신규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교 ¹⁾

가 : 최○○ 사내이사(대표이사) 선임

나) 제2022년도 제 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03.02.

항목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순임	황종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	
3. 상정안건 ¹⁾				
가. 임기만료 사외이사 재선임	찬성	찬성	-	가결

* 비교 ¹⁾

가 : 황○○ 사외이사 중임

3) 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

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 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2022년말 현재 기준으로 경영진에서 요청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토한 임원 추천현황은 상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2건입니다.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 2. 이사회 다) 활동내역 참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라) 활동내역 참조

다) 감사위원회

: 6. 감사위원회 다. 활동내역 및 평가 참조

라) 위험관리위원회

: 7. 위험관리위원회 다. 활동내역 및 평가 참조

마) 보수위원회

: 2절 보수체계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참조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윤광기

(1) 활동내역

사외이사 윤광기는 '22년 중 개최된 이사회 14회 중 14회 참석하였습니다. 법률분야 전문가로

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윤광기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자문을 위해 2022년 중 총 64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김순임

(1) 활동내역

사외이사 김순임은 '22년 중 개최된 이사회 14회 중 14회 참석하였습니다.

대기업 및 타 금융기관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순임은 당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자문을 위해 2022년 중 총 6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황종근

(1) 활동내역

사외이사 황종근은 '22년 중 개최된 이사회 14회 중 14회 참석하였습니다.

법률분야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황종근은 당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자문을 위해 2022년 중 총 47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요약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시간 실 적
			감사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보수 위원회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윤광기	14	14	115	13	13	23	13	13	54	-	-	-	-	-	-	64시간
김순임	14	14	115	13	13	23	13	13	54	-	-	-	1	1	2	65시간
황종근	14	14	115	13	13	23	-	-	-	-	-	-	1	1	2	47시간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2022년말 현재 기준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2022년말 현재 기준으로 사외이사 교육실적으로 자금세탁방지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황종근

가) 자격요건

사외이사 황종근은 선임시부터 현재까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황종근은 법률전문가로서 관련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법률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수행가능
다. 윤리책임성	충족	법률전문가로 높은 수준의 윤리책임성을 갖춘
라. 충실성	충족	사회적·경제적 지위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 가능

2) 사외이사 윤광기

가) 자격요건

사외이사 윤광기는 선임시부터 현재까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윤광기는 법률전문가로 선임시부터 현재까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법률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수행가능
다. 윤리책임성	충족	높은 수준의 윤리책임성을 갖춘
라. 충실성	충족	사회적·경제적 지위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 가능

3) 사외이사 김순임

가) 자격요건

사외이사 김순임은 선임시부터 현재까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김순임은 대기업 및 타 금융기관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선임시부터 현재까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대기업 및 타금융기관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성 확보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수행가능
다. 윤리책임성	충족	높은 수준의 윤리책임성을 갖춘
라. 충실성	충족	사회적·경제적 지위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 가능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2022년말 현재 기준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통해 평가가 이뤄집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임원 자격요건 심사표에 의해서 평가가 이뤄지며, 전문성 및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③ 평가 절차

이사회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위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는 2022년말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필요시 객관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사외이사를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임, 경영활동에 적절한 의견개진 등을 통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내부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향후 특이사항이 발견 시 그 내역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2022년말 현재 기준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외부평가

가) 외부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위해 별도의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2022년말 현재 기준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는 2018년 03월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윤광기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경영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등과 관련된 평가 등은 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내 위원회 지원을 위해 각각 감사실(감사위원회), 위험관리담당자(위험관리위원회), 경영지원팀(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회의 일정의 조정, 안건의 정리 및 통지 등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윤광기

가) 재직기간 : 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말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00만원	
	기본금	600만원	월 50만원 * 12개월
	상여금	-	
	기타 수당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2) 사외이사 김순임

가) 재직기간 : 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말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3,600만원	
	기본금	3,600만원	월 300만원 * 12개월
	상여금	-	
	기타 수당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4) 사외이사 황종근

가) 재직기간 : 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말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200만원	
	기본금	1,200만원	월 100만원 * 12개월
	상여금	-	
	기타 수당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2022년말 현재 기준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정동원	`15.9.18	`17.12 퇴임	27개월	-	-	(주)L&P인베스트먼트 상무
김성균	`12.8.23	`19.03 퇴임	79개월	감사위	감사위	중앙대학교 교수
윤웅로	`19.03.29	`20.03 퇴임	12개월	감사위	감사위	토마토저축은행 부장 애플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윤광기	`17.12.22	`23.12.22	60개월	감사위	감사위원장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김순임	`17.03.30	`23.03.12	69개월	감사위	감사위	Arte10 Collection Art Advisor(Madrid)
황종근	`20.03.27	`24.03.03	33개월	감사위	감사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2월 제4차 이사회에서 「경영승계계획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은 이사회가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붙임 4]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1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요건으로 관련 법률(지배구조법)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쉽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당행은 원활한 최고경영자 승계를 통한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방법으로는 사내추천, 주주, 외부 자문기관의 추천을 활용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위한 사내 연수과정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적격성 요건 평가방법은 내규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추천합니다.

최고경영자 임기만료 등으로 경영승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직무수행일 30일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후보군에서 최종후보자 1인을 선정합니다.

최종후보자 선발 절차는 먼저 기존에 보유한 후보군에 대하여 승계절차 개시시점에서 자격요건을 재검증하여 대상 후보군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평판조회를 통해 1차로 2~3명의 후보군으로 대상자를 압축합니다. 그 후 면접을 통해 후보자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과 경영방침을 심사하여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고 경영자 후보추천자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사회는 20일 이내로 최고경영자 후보를 심의·확정하고,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을 위한 안건으로 부의합니다.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를 선임하고, 주주총회 직후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최종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금융감독기구로부터의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사 또는 경영진의 요구 등으로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비상경영계획 승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이사회는 경영승계 사유, 개시일자, 결정시기 등을 결정하고, 경영승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동시에 지정하게 됩니다. 직무대행자는 이사회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상법 제408조에서 규정한 회사의 상무(常務)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의 자격검증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경영승계절차 개시 후 지체없이 최종후보자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추천된 최고경영자 후보를 이사회에서 최종후보로 결정시 해당 후보가 이사인 경우에는 그 즉시 대표이사 선임을 완료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해당 후보가 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선임 절차를 우선 진행합니다. 소집공고 등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개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신규 이사 선임을 완료한 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배구조법 제5조 및 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평가

당사의 최고경영자(대표이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향후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쉽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평가

당사의 최고경영자(대표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쉽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당행이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라 .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2022년 기간 중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사례가 없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2022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와 관련하여 운영실적이 없으나, 향후 대표이사의 임기만료시점에서 최대주주와 협의하여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2022년 기간 중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사례가 없습니다.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승계계획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추천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2022년 중 후보군 관련 활동 실적이 없습니다.

3) 후보군 현황

2022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후보군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승계계획의 점검 역시도 해당 규정에 따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2년중 경영승계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수행하지 않았으며, 향후 매사업년도 기준 1회 이상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 직원수 : 6명
- 담당자 : 부장 박형성 (041-901-27**) / 대리 정유섭 (041-901-27**)
- 운영내역 : 2022년 기간 중 운영실적 없음.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 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합니다.

더불어 별도의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경영진 등에 대한 보상을 심의·의결합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 검증된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심의·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감사위원회의 고유업무인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 보상에 대한 심의·의결 시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22년도에는 총 13회의 감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안건의 심의 및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412, 지배구조법§20④)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402)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외감법§4). 2022년도는 감리조치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대성삼경회계법인이 지정되었습니다.

다) 상근감사위원 관련 사항

2022년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정기주주총회 6주전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 재무제표 및 부속 서류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매분기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모범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별다른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점검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 §25①)

또한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 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5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2년도 감사위원회(1월 개최)에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2022년말 현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는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1명 이상의 법률 또는 재무 전문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근/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윤광기	사외	위원장	2021.12.22.	2023.12.22.
김순임	사외	위원	2021.03.12.	2023.03.12.
황종근	사외	위원	2022.03.03.	2024.03.03.

※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으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고, 감사업무대행자로 감사실장(이사)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2년도에는 총 13회의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감사위원의 참석률은 100%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2년도 제 1차 감사위원회 : 2022.01.24. (월) 오후2시

[안건 통지일 : 2022.01.2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1년 4/4분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감사협의제도 관련 - 1) 브릿지론 일반대출의 적정성, 2)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2년 1/4분기 대손상각(자체) 책임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1년도 내부통제체계 운영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22년도 제 2차 감사위원회 : 2022.02.10. (목) 오후 1시

[안건 통지일 : 2022.02.0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1년 귀속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22년도 제 3차 감사위원회 : 2022.02.21. (월) 오후2시

[안건 통지일 : 2022.02.1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2년 1/4분기 대손상각(승인 상각) 책임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22년도 제 4차 감사위원회 : 2022.03.30. (수) 오후3시

[안건 통지일 : 2022.03.2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규제지역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점검 및 PF대출(중통) 자금집행 내역 점검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022년도 제 5차 감사위원회 : 2022.04.18. (월) 오후2시

[안건 통지일 : 2022.04.1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2년 2/4분기 대손상각(자체 상각) 책임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2022년도 제 6차 감사위원회 : 2022.05.11. (수) 오후2시

[안건 통지일 : 2022.05.0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2년 2/4분기 대손상각(승인 상각) 책임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2022년도 제 7차 감사위원회 : 2022.06.15. (수) 오후2시
 [안건 통지일 : 2022.06.0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2년 준법감시인 연간활동 계획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2년 2/4분기 대손상각(자체 상각) 책임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점검 결과 및 향후 처리방안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제2022년도 제 8차 감사위원회 : 2022.07.20. (수) 오후2시
 [안건 통지일 : 2022.07.1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내부감사협의제도 - 1) 채무조정제도 운영의 적정성, 2)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2년 2/4분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2년 상반기 준법감시인 활동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제2022년도 제 9차 감사위원회 : 2022.08.17. (수) 오후2시
 [안건 통지일 : 2022.08.1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2년 3/4분기 대손상각(승인 상각) 책임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제2022년도 제 10차 감사위원회 : 2022.09.21. (수) 오후2시
 [안건 통지일 : 2022.09.1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내부감사책임자의 집행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카) 제2022년도 제 11차 감사위원회 : 2022.10.19. (수) 오후2시
 [안건 통지일 : 2022.10.1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2년 3/4분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타) 제2022년도 제 12차 감사위원회 : 2022.11.16. (수) 오후2시
 [안건 통지일 : 2022.11.0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2년 3/4분기 준법감시인 활동 결과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2년 4/4분기 대손상각(승인 및 자체상각) 책임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파) 제2022년도 제 13차 감사위원회 : 2022.12.21. (수) 오후1시

[안건 통지일 : 2022.12.1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51기 정기검사 결과 보고 및 명령휴가 제 실시 점검 결과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52기 자체감사 계획안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에서는 매년 초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감사위원회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으로 감사실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2017년 12월 22일 상근감사위원이 사임함에 따라 2022년 현재 감사실장 1명, 보조직원 3명으로 구성된 감사실이 감사보조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총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위험관리 관련한 주요 방침, 조직, 부담가능 위험수준, 각종 한도 설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더불어 위험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 그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위험관리관련 유관부서장으로 구성된 위험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협의 및 제반업무를 이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본 위원회는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에 대해서 심의·의결합니다. 위험관리에 대해서 영업부문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견제와 균형기능을 유지, 위험 허용한도는 수익 창출능력과 자기자본을 감안하여 설정 및 관리, 통일된 지표 및 일관성 유지, 적절한 위험 분산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본 위원회는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에 대해서 심의·의결합니다. 관련 법규상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등 주요 위험관리지표 감안하여 리스크 한도 설정 및 검토를 수행합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본 위원회는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에 대해서 심의·의결합니다. 주요 리스크 관리영역인 운영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에 대한 한도 관리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 대응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여 회사의 주요 활동 영역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본 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 심의·의결합니다.

마) 기타

본 위원회는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험 관리에 중요하다고 판

단되는 사항에 대해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대표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회사의 위험관리정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하였고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개최, 사무 등의 담당·처리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근/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순임	사외	위원장	2021.02.27	2023.03.12
윤광기	사외	위원	2021.12.22	2023.12.22
최진준	상근	위원	2022.03.03	2025.03.03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2년에는 총 13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100%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2년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2년 01월 27일

[안건 통지일 : 2022.01.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순임	송기문	윤광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리스크관리 정기보고 (21.12월말 기준)	특이사항 없음.			
나. 투자심의위원회 활동내역 보고 (5건)	특이사항 없음.			
다. 유동성 비율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개인사업자대출 업종별 현황 및 관리업종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유가증권 담보대출 최소 담보비율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22년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2년 02월 24일
[안건 통지일 : 2022.02.1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순임	송기문	윤광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리스크관리 정기보고 (22.01월말 기준)	특이사항 없음.			
나. 투자심의위원회 활동내역 보고 (8건)	특이사항 없음.			
다. 유동성 비율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영업한도금액 설정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22년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2년 03월 08일
[안건 통지일 : 2022.03.0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위기상황 비상계획 '위기단계' 해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22년도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2년 03월 31일

[안건 통지일 : 2022.03.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리스크관리 정기보고 (22.02월말 기준)	특이사항 없음.			
나. 투자심의위원회 활동내역 보고 (5건)	특이사항 없음.			
다. 유동성 비율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라. 위험관리규정 개정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 해당사항없음				

마) 제2022년도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2년 04월 28일

[안건 통지일 : 2022.04.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리스크관리 정기보고 (22.03월말 기준)	특이사항 없음.			
나. 투자심의위원회 활동내역 보고 (8건)	특이사항 없음.			
다. 유동성 비율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라. 위험관리규정 개정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 해당사항없음				

바) 제2022년도 제6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2년 05월 26일

[안건 통지일 : 2022.05.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1. 위원 성명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리스크관리 정기보고 (22.04월말 기준)	특이사항 없음.			
나. 투자심의위원회 활동내역 보고 (6건)	특이사항 없음.			
다. 유동성 비율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개인사업자대출 업종별 현황 및 관리업종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2022년도 제7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2년 06월 28일

[안건 통지일 : 2022.06.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1. 위원 성명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리스크관리 정기보고 (22.05월말 기준)	특이사항 없음.			
나. 투자심의위원회 활동내역 보고 (3건)	특이사항 없음.			
다. 유동성 비율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 해당사항없음				

아) 제2022년도 제8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2년 07월 26일

[안건 통지일 : 2022.07.1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1. 위원 성명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리스크관리 정기보고 (22.06월말 기준)	특이사항 없음.			
나. 투자심의위원회 활동내역 보고 (6건)	특이사항 없음.			
다. 유동성 비율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위기상황 비상계획 '경계단계' 선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제2022년도 제9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2년 08월 30일

[안건 통지일 : 2022.08.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1. 위원 성명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리스크관리 정기보고 (22.07월말 기준)	특이사항 없음.			
나. 투자심의위원회 활동내역 보고 (8건)	특이사항 없음.			
다. 유동성 비율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라. BIS비율 관리목표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영업한도금액 설정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개인사업자대출 업종별 현황 및 관리업종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제2022년도 제10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2년 09월 27일

[안건 통지일 : 2022.09.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1. 위원 성명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리스크관리 정기보고(22.08월말 기준)	특이사항 없음.			
나. 투자심의위원회 활동내역 보고(6건)	특이사항 없음.			
다. 유동성 비율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주식 매도 유예 요청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카) 제2022년도 제11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2년 10월 31일

[안건 통지일 : 2022.10.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1. 위원 성명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리스크관리 정기보고 (22.09월말 기준)	특이사항 없음.			
나. 투자심의위원회 활동내역 보고 (4건)	특이사항 없음.			
다. 유동성 비율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라. 위기상황분석 실시 및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위기상황 비상계획 해제 및 선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타) 제2022년도 제12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2년 11월 28일

[안건 통지일 : 2022.11.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1. 위원 성명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리스크관리 정기보고 (22.10월말 기준)	특이사항 없음.			
나. 투자심의위원회 활동내역 보고 (8건)	특이사항 없음.			
다. 위기상황 비상계획 '주의단계' 선언	특이사항 없음.			
라. BIS비율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 해당사항없음				

파) 제2022년도 제13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2년 12월 29일

[안건 통지일 : 2022.12.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순임	윤광기	최진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리스크관리 정기보고(22.11월말 기준)	특이사항 없음.			
나. 투자심의위원회 활동내역 보고(1건)	특이사항 없음.			
다. 위기상황 비상계획 '주의단계' 해제	특이사항 없음.			
라. BIS비율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마.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개인사업자대출 업종별 현황 및 관리업종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평가의 목적은 위험관리위원회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활동에 반영하여, 위험관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전년도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에 대해서 매년 점검하며 위험관리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가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당행은 2022년 중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는 2022년말 기준으로, 지배구조법 시행 후부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보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감사위원회가 보수위원회를 대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서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운영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보수위원회를 대신하게 된 감사위원회의 총인원수는 3명이며 정관에서 감사위원의 수는 3명 이상의 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수는 3명이며 사외이사는 최소 3분의 2이상 필요합니다.(정관 제39조의3 제2항, 감사위원회규정 제8조)

이 경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이는 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회 의원 구성 최소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2022년 말 기준으로 현재 감사위원회는 모두 3명의 감사위원(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인 선임시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임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지배구조법에 따라 당사에 6년 또는 당사와 계열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 재직할 경우에는 연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7호)

임원 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소극적 자격요건과 회사가 정한 자격조건,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임원과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지배구조법 제5조, 제6조 1항 및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으로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정관 제27조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적극적인 자격요건은 전문성 및 직무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2년말 현재 감사위원의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법률분야 2명, 비금융분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이 심도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법률분야 전문가인 윤광기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20.3월 선임되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근/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윤광기	사외	위원장	2021.12.22	2023.12.22
황종근	사외	감사위원	2020.03.27	2024.03.03
김순임	사외	감사위원	2021.03.12	2023.03.12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감사위원회(보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게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감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27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임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대상없음)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성과보수체계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심의하였습니다.

임원에 대한 보수 및 지급방식은 2018년 05월 01일 개정된 당사의 '보수체계지침'에 따릅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감사위원회는 2020년 1월 16일 감사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제출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작성기준으로 의결하였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감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27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지침’에서 이연지급대상 장기성과급의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특히 성과급 발생초기 100분의 60을 지급하고,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을 성과에 연동하여 3년 이상 이연하도록 하는 등 운영자산의 운영기간과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소집 방법, 결의방법, 주요현황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절차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감사위원회에서는 보수체계가 운영자산의 위험요소에 연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및 제반 법규정에 적합한 지를 중점적으로 상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감사위원회는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① 국내 :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팀장의 직책에 해당하는 직원
- ② 해외 : 해당사항 없음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 감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27일 감사위원회에서 ‘보수체계지침’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지배구조법(시행령 제17조)에서 정의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및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팀장이상의 직원을 변동보상 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임원의 범주에서는 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하였고,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는 단기성과 추구를 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습니다. 해당 범주에 따라 2022년 12월 말 기준 하기의 인원을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2	대표이사, 이사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7	팀장급 이상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를 대신하게 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현재 윤광기 사외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시 소집절차가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2022년 2월 2일 감사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2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2년 02월 02일 오후 1시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윤광기	김순임	황종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1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평가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보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등), 성장성 지표(여신잔액 증가율, 여신신규 취급액 비율 등), 건전성 지표(연체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의 경우 수익성 지표(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등), 성장성 지표(여신잔액 증가율, 여신신규 취급액 비율 등), 건전성 지표(연체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적용대상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평가기준 마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 및 담당부서에 대한 평가를 주요 지표로 하여 개인 성과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성과보수 중 감사위원회에서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의·의결을 통해 일시지급할 연간성과급 비율과 이연지급할 비율을 정하고 연간성과급은 현금으로 일시지급하고 장기성과급은 산출된 지급금액 중 6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 및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팀장의 직책에 해당하는 직원은 투자성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이연기간을 3년으로 하여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은 3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지급시에도 경영성과가 반영된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수 지급을 위한 금액이 지급확정되며, 이를 현금으로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수는 기본급으로 분류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팀장의 직책에 해당하는 직원은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인센티브는 성과보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성과보수의 비율은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한다. 여기서 투자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2. 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대출업무에 종하는 직원중 팀장직책에 해당하는 직원은 성과급 발생초기 100분의 60을 지급하고,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을 성과에 연동하여 3년 이상 이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연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년도에는 100분의 10, 두번째 사업년도에는 100분의 20, 세번째 사업년도에는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대상자가 이연기간 도중 퇴임 시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연하여 지급할 성과보수에서 손실금을 차감하여 퇴임 후 3개월 이내에 일시로 지급한다.
3. 그 밖에 성과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당사는 비상장금융회사로 성과보수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당사는 비상장금융회사로 성과보수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 및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팀장의 직책에 해당하는 직원은 성과보수액 중 6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 40%는 현금으로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일반 직원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그리고 성과공유라는 취지에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고려) 중 일부를 성과보수(인센티브)로 책정하고 부서별 성과평가 지표 및 개인의 인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현금으로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직무역량 및 장기근속 등을 통해 회사 발전에 이바지 하는 직원의 기본연봉체계 안정화정책과 일시적 성과를 지양하고 보수적·안정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2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은 없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17년 12월 27일 감사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보수체계지침’을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마련하였으며, 보수체계지침을 통하여 보수체계 및 성과보수의 기본원칙, 설계 및 조정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대상자, 이연기간 및 이연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 (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전년도 (2021년)	61.5	58.3	105.5%	63	0.98
당해연도 (2022년)	51.7	401.2	12.9%	73	0.71

주1)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주2) 임직원 보수총액 중 2022년 성과보수액은 2023년 하반기 중 반영하여 공시예정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대표 이사	그외	업무집행 책임자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전년도 (2021년)	보수총액	3.4	9.3	-	7.7	8.8	16.9	15.4
	성과보수액	0.4	0.5	-	1.4	0.5	0.6	0.4
당해연도 (2022년)	보수총액	1.3	5.6	-	5.4	6.4	20.1	12.9
	성과보수액	-	-	-	0.1	0.1	0.1	0.1

주1) 2022년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보수는 아래와 같음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대표 이사	그외	업무집행 책임자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당해연도 (2022년)	보수총액	작성중 (2023년 하반기 공시예정)						
	성과보수액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2)}		
			이연지급대상		
전년도 (2021년)	임원	9	12.7	0.9	0.9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	1.8	0.1	0.1
당해연도 (2022년)	임원	작성중 (2023년 하반기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해당년도 중 6개월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근원(수당, 실지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 상품 ^{주2)}	기타 ^{주3)}
전년도 (2021년)	임원	0.9	0.9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1	0.1		
당해연도 (2022년)	임원	작성중 (2023년 하반기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1)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액을 의미한다.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주1)}		
			지급확정 ^{주2)}	지급미확정 ^{주3)}
전년도 (2021년)	임원	1.2	1.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1	0.1	
당해연도 (2022년)	임원	작성중 (2023년 하반기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기재

주3) 2020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익년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2021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 상품	기타	
전년도 (2021년)	임원	1.2	1.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1	0.1			
당해연도 (2022년)	임원	작성중 (2023년 하반기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21년)	임원	1.2	0.9	0.1	0.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1	0.1				
당해연도 (2022년)	임원	작성중 (2023년 하반기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 해당연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21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1년(t기) 발생분, 2020년(t-1기) 발생분, 2019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4)}
		축소액 ^{주1)}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전년도 (2021년)	임원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연도 (2022년)	임원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주1) 해당년 직전연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연도말 누적액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기준 최고지급액
전년도 (2021년)	임원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연도 (2022년)	임원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주1)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첨부1. 정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정 관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정 관

1972. 12. 25 제정 1974. 11. 18 개정 1977. 12. 30 개정 1980. 02. 23 개정 1982. 02. 24 개정 1984. 08. 21 개정
 1987. 08. 31 개정 1993. 08. 31 개정 1996. 03. 02 개정 1962. 06. 24 개정 1996. 08. 31 개정 1999. 09. 03 개정
 2000. 12. 12 개정 2002. 02. 23 개정 2002. 04. 08 개정 2002. 05. 02 개정 2003. 12. 09 개정 2004. 09. 30 개정
 2004. 11. 05 개정 2008. 08. 07 개정 2010. 08. 04 개정 2012. 09. 25 개정 2013. 09. 30 개정 2014. 09. 22 개정
 2015. 09. 18 개정 2017. 03. 30 개정 2018. 06. 04 개정 2019. 02. 27 개정 2020. 02. 27 개정 2021. 03. 12 개정
 2022. 03. 03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ANGSANGINPLUS SAVINGS BANK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저축은행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용계업무
2. 신용부금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4. 자금의 대출업무
5. 어음의 할인업무
6. 내·외국환업무
7. 보호예수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10.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11. 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함.
16.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보증

17.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3조(영업구역) 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이 저축은행의 주된 사무소(본사)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다.

② 이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공고의 방법) ①이 저축은행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sangsanginplussb.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에서 발간하는 대전일보에 게재한다.

※ 공고방법으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
(관련규정 : 상법 제289조, 상법 시행령 제6조)

②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업무방법서) ①이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표준업무방법서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한다.

②저축은행이 업무의 종류 및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은행중앙회장이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자본금과 주식

제8조(저축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저축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6,400,000주로 한다.

제9조(1주의 금액) 이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10조(주식의 종류) 이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1조(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저축은행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주로 한다.

제11조2(주권의 종류) 이 저축은행이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2조(신주인수권) ①이 저축은행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

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이 저축은행은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저축은행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주식 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 또는 이사가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4조(주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상계금지) 이 저축은행의 주주는 주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저축은행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5조(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②전항의 규정은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 년 월 일

제17조(주주명부의 효력) 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저축은행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한다.

②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8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저축은행은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저축은행의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이 저축은행은 임시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질권의 등록) ①저축은행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축은행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는 저축은행의 주주명부 및 주권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이미 설정된 질권이나 신탁재산의 표시의 말소 또는 전질이나 질권이동의 등록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20조(권리자의 신고) ①주주,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인감 또는 서명을 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공증에 의한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법정대리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저축은행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주권의 오손 및 상실과 재교부) ①주권을 오손하였을 때에는 저축은행에 구주권을 제출하고 신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첨부한 주권의 진위를 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손하였을 때에는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상세한 설명 또는 확실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저축은행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2조(사채의 발행) ①이 저축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 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23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3. 이사 및 감사 임면
4. 자본의 감소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합병
6. 결산 및 저축은행의 재산상 중요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8.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소집시기) ①이 저축은행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의2(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 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3(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저축은행은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의4(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의3(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 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5조의4(의결권 제한) ①이 저축은행,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저축은행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②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출석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5(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저축은행은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 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6(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7(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6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 · 이사회

제27조(이사의 수) ①이 저축은행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②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한다.

제27조의2(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3(사외이사의 선임 및 자격기준)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최근 10년내에 5년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27조의4(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삭제

제27조의5(업무집행책임자) ①이 저축은행은 업무집행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저축은행의 업무를 분장받아 집행한다.

②업무집행책임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28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선임시의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제28조의2(이사의 보선) ①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7조에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7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미달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이 저축은행은 이사회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30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저축은행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이사회회의 권한) ①이 저축은행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주주총회 관련사항】

1.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일반경영 관련사항】

6.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예산(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중요한 차입,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이상 고정자산 매입 또는 투자유가증권 매입 등
9. 대출운용기준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임원 관련사항】

10. 주요 규정·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11. 상법 제397조 내지 제398조에 의한 이사의 경업거래, 겸직,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및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12.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 선임 및 해임
13.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4. 대주주·임원 등과 이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15.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

【자본조달 및 자본금 관련사항】

16. 주식 및 채권의 발행 결정
17. 자본금 변경, 제준비금 자본전입
18. 자산 재평가

【기타사항】

19.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20.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22. 본점의 이전, 지점(출장소) 설치, 이전 및 폐지
23. 저축은행의 자기주식 취득
24. 자회사의 설립(인수) 및 매각
25. 주주총회 위임사항
26.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적인 경영분석 보고
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 지배인 선임·해임
2. 지점(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제32조(이사회 의 소집) ①이 저축은행은 이사회 의 결의로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사외 이사를 선임한다.

③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⑥이사회 소집통지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의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안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⑧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7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 의 결의 방법) ① 이사회 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등과 회사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③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이사회 결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

제34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위원회) 삭제

제35조(저축은행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6조(저축은행에 대한 책임의 면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의2(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저축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3월에 1회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주주의 유지청구권 및 대표소송) ① 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저축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저축은행을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 및 제38조의2 삭제

제39조(고문) 이 저축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9조의2(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이사회 내 위원회

제39조의3(이사회내 위원회) ①이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②법령과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9조의4(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②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③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며, 이 저축은행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그 후보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제39조의5(감사위원회) ①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2/3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②감사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③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39조의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④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한다.

⑤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해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맞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맞도록 조치한다.

⑧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⑨감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⑩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준용한다.

제39조의6(위험관리위원회) ①위험관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②위험관리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③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6 장 회 계

제40조(사업연도) 이 저축은행의 매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승인, 공고) ①이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의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상법 제447조의4 제2항의 사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및 제43조 삭제

제44조(이익금의 처리) ①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45조(이익의 배당) ①저축은행은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적립금의 합계금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법정적립금액의 액
4.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②저축은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5조의2(중간배당) ①이 저축은행은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의 적립된 법정적립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3(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기간은 감사인과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임. (관련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6조(회계규정) 이 저축은행의 회계처리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회가 제정하는 회계규정

에 의한다.

제46조의2(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저축은행에 귀속한다.

제 7 장 보 칙

제47조(상법의 적용) 이 정관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8조(정관의 변경) 저축은행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저축은행중앙회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표준정관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변태설립사항) 삭제

부 칙

1. 이 상호저축은행의 설립시에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면 군사리 765

발 기 인 : 金 英 壽

주 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 152

발 기 인 : 金 柄 玉

주 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 145

발 기 인 : 羅 相 珍

주 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 145

발 기 인 : 羅 仁 煥

주 소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588

발 기 인 : 羅 升 煥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면 태월리 279

발 기 인 : 쉰 永 沼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면 군사리 355

발 기 인 : 朱 日 善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면 군사리 765

발기인대표 金 英 壽

작 성 일 : 1972년 10월 26일

부 칙

1. (구업무의 정리)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유사 상호신용금고 업무는 별도 계정을 두어 정리한다.
2. (동전) 종래의 업무가 종결될 때에는 사업년도말 이전이라도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손익상황을 확정 공고하고 당해년말에 이르러 당해년도의 업무실적과 합산정리 한다.

개정일 1972년 12월 25일

" 1974년 11월 18일

" 1977년 12월 30일

" 1980년 2월 23일

" 1982년 2월 24일

" 1984년 8월 21일

" 1987년 8월 31일

" 1993년 8월 31일

" 1996년 3월 2일

" 1996년 6월 24일

" 1996년 8월 31일

" 1999년 9월 3일

" 2000년 12월 12일

- " 2002년 2월 23일
- " 2002년 4월 8일
- " 2002년 5월 2일
- " 2003년 12월 9일
- " 2004년 09월 30일
- " 2004년 11월 05일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4. 09. 01.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정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상법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금액의 인상조치를 취할 때까지 그 시행을 유예한다.
3.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제25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제37조. 제38조,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이 정관 개정에 불구하고 상법부칙 제12조. 제 14조. 제15조 및 제3조의 각 규정을 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5. 04. 0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승인) 이 정관은 법 제10조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 08.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책임 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8. 04.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8. 07.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 08.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 08.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 03.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 08.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 05.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 05.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 02. 0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 08. 0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 08. 0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 09.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 09.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 09.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 09.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 03.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 06. 0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 02.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 02.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 07.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 03.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 03. 03.부터 시행한다.

[첨부2. 이사회 규정]

이사회규정

2003.12.01. 제정 2007.08.07. 개정 2008.08.07. 개정 2014.06.16. 개정 2018.05.01. 개정 2019.09.10. 개정 2022.03.31. 개정
2022.12.08.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이사회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이하 “이사” 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18.05.01.>

제 3 조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8.05.01.>

②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개정 18.05.01.>

제 4 조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8.05.01.>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8.05.01.>

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개정 18.05.01.>

④ 이사회 소집 통지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의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안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8.05.01.>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전화, 전자메일, 등기우편, 모사전송(FAX), 기타 방법(모바일 메신저 등)등 한 가지 이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2.12.08.>

제 5 조 (의결)

① 이사회 결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등과 회사

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개정 18.05.01.>

③ 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전화, 전자메일, 등기우편, 모사전송(FAX), 기타 방법(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8.05.01.>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8.05.01.>

제 6 조 (의결사항)

① 이사회에서 의결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 관련 사항】

1.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18.05.01.>
3.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개정 18.05.01.>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18.05.01.>
5.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일반경영 관련 사항】

6.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예산(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18.05.01.>
8.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중요한 차입,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이상 고정자산 매입 또는 투자유가증권 매입 등
9. 대출운용기준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18.05.01.>

【조직 및 임원 관련 사항】

10. 주요 규정·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표준규정 및 표준약관의 제·개정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단, 표준규정 및 표준약관의 제·개정 사항을 그대로 채택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19.09.10>

<삭제> <개정 18.05.01.>

11. 상법 제397조 내지 398조에 의한 이사의 경업거래, 겸직,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및 이사 등

의 자기거래 승인 <개정 18.05.01.>

12.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 선임 및 해임 <개정 18.05.01.>

13.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18.05.01.>

14. 대주주·임원 등과 이 상호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18.05.01.>

15.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

【자본조달 및 자본금 관련 사항】

16. 주식 및 채권의 발행 결정
17. 자본금 변경, 제준비금 자본전입 < 삭 제 > <개정 18.05.01.>
18. 자산 재평가

【기타 사항】

19.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20.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18.05.01.>
2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개정 18.05.01.>
22. 본점의 이전, 지점(출장소) 설치, 이전 및 폐지 <개정 18.05.01.>
23. 저축은행의 자기주식 취득
24. 자회의 설립(인수) 및 매각
25. 주주총회 위임사항
26. 자금세탁방지업무등을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 자금세탁방지업무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2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의2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정 22.03.31>
28.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8.05.01., 22.03.31.>

②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적인 경영분석 보고
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8.05.01.>

1. 지배인 선임·해임
2. 지점(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제 7 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책임) <본조신설 18.05.01.>

- ① 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 8 조 (의견의 청취 등)

1. 의장은 이사회에서 집행 간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부의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질의에 답변

하

게 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의사록) <개정 18.05.01.>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적용범위) <본조신설 18.05.0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0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명칭변경)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08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1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의결사항-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주요 규정, 기존의 제·개정 또는 폐지 (표준규정 및 표준약관의 제·개정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6조 6호의 의결대상 기준 <신설 18. 05. 01.>

구분	기준	비고
계약	계약금액이 자기자본의 5 % 이상	
소송	소송금액이 자기자본의 5 % 이상	대여금소송 제외
차입	차입금액이 자기자본의 5 % 이상	
고정자산 매입	매입가격이 자산총액의 10 % 이상	
투자유가증권 매입	매입가격이 자기자본의 5 % 이상	

*자기자본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⑤의 자기자본(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에 따른다.

[첨부3.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2008. 8. 7 제정 2017. 8. 11 개정 2019. 4. 1 개정 2020. 7. 1 개정 2022. 12. 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역할) 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하 "회사"라 한다)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요청 <개정 2019.3.28.>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5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8.11.>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

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①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8조(선임 및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신설 2017.8.11.>

③위원회 위원은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0.7.1.>

⑤ 대표이사는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신설 2020.7.1.>

제9조(해임 및 총원) <삭제>

제10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권한위임) ①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상근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이 없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내부감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개정 2020.7.1.>

②상근감사위원이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간사 또는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상근감사위원의 추인을 받는다.

③제18조제1항에 따라 상근감사위원에 위임된 사항은 상근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정기위원회에서 보고한다. <개정 2020.7.1.>

④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감사위원이 공람한다.

제3장 회 의

제12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당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3조(소집절차)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화, 전자메일, 등기우편, 모사전송(FAX), 기타 방법(모바일 메신저 등)등 한 가지 이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 전화, 전자메일, 등기우편, 모사전송(FAX), 기타 방법(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7.8.11.>

③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결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마.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 바.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감사계획의 수립
- 나.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 다.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라.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요청 <개정 2019.3.28.>
-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사항
- 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사항
- 사.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아.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4. 기타

-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사항

1.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다.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 라. 회사의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 마.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 바. 준법감시인의 보고사항
- 사.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 아.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 자.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 2. 기타
 -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8조(상근감사위원의 위임) ①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상근감사위원이 없는 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제9호 내지 제11호 및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과 여신심사위원회 부의 안건중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동일인여신한도 준수사항, 출자자와 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취급과 관련된 안건은 반드시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부서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상근감사위원은 전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이외에 중요 업무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보조조직) ①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감사)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②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제22조(감사록의 작성) ①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 전의 감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종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의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한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 임기의 적용례) 제8조 제4항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감사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저축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이 주주와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 ①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저축은행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공시 및 그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정 등) 이 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상호저축은행법, 지배구조법, 상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을 말하고, 그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 법률"이라 한다),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구성 현황

제5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선임한다.

- ②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써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사외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로써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저축은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제9조(이사회 권한) ① 이사회는 지배구조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 임원 등과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경영분석
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 및 의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지배구조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저축은행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는 저축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저축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저축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이사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2조(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려는 경우, 그 책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 퇴임사유 및 절차) ① 이사의 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3. 관련 법률, 정관 등에서 정한 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경우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회일 1주간 전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그 소집 회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제16조(의결권 행사 방법) ① 이사회의 의결은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제1항의 의결정족수 계산에서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그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는 자기평가, 저축은행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구성·기능

제18조(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①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축은행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감사위원회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 ②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 의결은 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이 규범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의 대표(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로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⑤ 이 규범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및 소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 후보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을 적용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관계자의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그 역할 및 권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감사위원에게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험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보수위원회) ① 보수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③ 보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3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재선임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 제24조(임원별 자격요건)** ① 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8조를 각각 적용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⑤ 저축은행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절 임원의 권한·책임

- 제25조(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 ① 저축은행은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한다. 대표이사는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저축은행의 업무를 분장 집행할 수 있다.

- 제26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 등의 권한과 책임)** 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진다.

- 제27조(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 ① 준법감시인은 저축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제29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항을 적용한다.
-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을 적용한다.
-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 ④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른다.

- 제31조(임원의 퇴임)** ① 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적용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해임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선임자(선임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 의결로 해임의결로 퇴임한다.
-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 의결로 해임의결로 퇴임한다. 이 경우 해임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에 따라 대표이사가 해임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32조(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① 저축은행은 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임원의 경영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저축은행에서 정한 내부 또는 외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① 저축은행은 사내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내부 또는 외부 교육 및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34조(임원 성과평가 등) ① 임원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임원의 담당업무 성과 등에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임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 보수지급 등에 활용한다.

제35조(보수의 지급) ①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체계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촉(또는 위임)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36조(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변경) ① 이사회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매년(또는 매 사업연도)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7조(경영승계 절차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시기) ① 최고경영자(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영승계 절차(이하 "경영승계 절차"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개시된다.

1.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2.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제7조 및 제8조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이사회가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임기 만료 30일 전
2. 제1항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후
3. 제1항 제3호의 경우 경영승계 절차 개시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제38조(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저축은행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저축은행 운영 및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계획) ①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② 최고경영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지체없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의 경영승계 절차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40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의 관리업무를 인사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 부서는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41조(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42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저축은행,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5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43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6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4조(최고경영자의 임기 및 역할 등)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관련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최고경영자의 퇴임 및 평가) ① 최고경영자의 퇴임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항 각 호

의 사유를 적용한다.

②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범이 정한 사항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지배구조법 부칙 제2조 내지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부칙이 정하는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험관리기준

2016. 10. 31 제정 2018. 6. 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이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 수행, 그 밖에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저축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직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위험관리 기본방침

제3조(위험관리 목표)

위험관리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가치 창출의 극대화와 저축은행의 자본 보호
2. 저축은행의 전략사업 및 재무목표 달성의 촉진
3. 수익 및 적정 자본금 수준의 관리와 수익 및 위험의 최적화를 통한 저축은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도모
4. 적정 신용등급의 유지
5. 적절한 위험 분산화
6. 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명확화와 위험을 감안한 성과평가 지원

제4조(위험관리 원칙)

위험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은 자회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위험관리 조직과 보고체계는 영업부문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견제와 균형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위험 허용한도는 저축은행의 수익 창출능력과 자기자본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위험의 측정, 평가 및 보고는 통일된 지표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특정 부문에의 과도한 위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여야 한다.
6. 위험관련 전산기술은 종합위험 관리체계 구현을 위하여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관리 역할과 책임)

부서 또는 사업부문이 위험관리에 관한 적절한 관리능력과 체제를 갖춘 경우에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험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로 일부 역할과 책임을 분산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관리**제6조(위험관리 대상)**

- ① 저축은행은 그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 수행, 그 밖에 각종 거래 과정에서 자기자본 또는 수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인 위험을 관리한다.
- ② 이사회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험 종류를 정한다.
단, 최근 사업연도 말 저축은행 자산이 7천억원 이상시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위험관리 절차)

위험관리는 위험 인식,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 보고의 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험 인식)

위험관리책임자 등 위험관리 담당자(이하 “위험관리담당자”라 한다)는 저축은행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을 파악 및 분석한다.

제9조(위험 측정)

- ① 위험관리담당자는 위험 종류별로 측정방법을 정하여 위험측정시스템에 이를 구현하고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종합적 측정뿐만 아니라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잠재적 영향을 포함한다)도 측정·평가한다.
- ② 저축은행의 규모, 거래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다양한 측정기준을 사용하되,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측정한다.
- ③ 측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결정과정과 방법론, 데이터의 출처, 기본가정, 시스템 설계요건 등 측정모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 모니터링 및 통제)

- ① 위험관리담당자는 위험한도 대비하여 위험부담액 등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 ② 위험관리 담당자는 한도 초과시 그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 또는 관련 회의체에 부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 보고)

- ① 위험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한다.
 1. 위험은 계량화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험은 그 위험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보고한다.
3. 위험은 적시성 및 일관성있게 보고한다.
- ② 위험관리 부서장은 주기적으로 전형적인 위험관리 현황을 종합 분석하여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보고한다.

제12조(위험관리 비상 상황)

- ① 금융사고, 긴급 상황 등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는, 저축은행 임직원과 위험관리 담당자는 단계별 결재라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결재권자에게 위험현황을 보고하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결재권자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위험수준 등

제13조(위험수준)

저축은행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수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설정한다. 단, 최근 사업연도 말 저축은행 자산이 7천억원 이상시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설정한다.

1. 위험 종류·한도와 이에 따른 위험 조합(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부담 및 거래 한도 등 설정·운영도 포함한다)
2. 주주 요구수익률과 이에 따른 위험 성향(위험 선호, 중립 또는 회피) 반영
3. 저축은행의 전략, 사업목표, 수익성 목표 및 자본수준과의 조화
4. 신규사업시 필요한 자본량 또는 확률 예상치를 넘어서는 손실에 대비한 완충자본의 적정 규모
5. 기타 저축은행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환경의 변화

제14조(적정투자한도 등)

저축은행은 그 위험성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투자한도, 손실허용한도를 정한다. 단, 최근 사업연도 말 저축은행 자산이 7천억원 이상시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 개별 위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측정수단에 의한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3. 측정가능한 위험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4. 연 1회 이상 설정하여 관리하고 경영환경 및 영업전략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위험관리 조직

제1절 위험관리책임자 및 위험관리조직

제15조(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 ① 저축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둔다.
- ② 저축은행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단, 최근 사업연도 말 저축은행 자산이 7천억원 미만일 경우 직원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인과 겸직이 가능하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저축은행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맞는 사람을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며, 효과적으로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저축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는 경우에 관련 사실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석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3. 위험관리정보시스템 운영
 4. 이사회, 임원, 위험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험관리정보를 적시에 제공
 5.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하다고 이사회, 위험관리위원회가 정한 사항
-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하여 임직원이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성 확보)

- ① 저축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6조 각 호의 업무 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각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단, 최근 사업연도 말 저축은행 자산이 7천억원 미만일 경우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저축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위험관리 전담 조직)

- ① 저축은행은 위험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위험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직은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한다.

제2절 위험관리위원회

제18조의2(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최근 사업연도 말 저축은행 자산이 7천억원 미만일 경우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이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제6장 임직원 준수사항 등

제19조(임직원 준수사항 등)

- ① 저축은행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관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하면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제20조(개별 위험관리)

개별 위험관리 실무부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원칙과 절차의 이행을 위한 세부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절차 및 업무 프로세스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장부외거래 작성 등)

- ① 저축은행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장부외거래기록”이라 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② 장부외거래기록은 자산의 성질을 가진 것과 부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장부외거래기록은 거래의 종류·상대방·규모·조건·유지기간, 당해 거래에 따른 회사의 부담 및 예상되는 영향, 당해 거래에 이용된 표시통화 및 결제통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저축은행은 장부외거래기록을 당해 거래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기준 제정 등)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다. 단, 위험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